

# 통영기지사 2차 기간제계약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 플랫폼 전문기업(Energy Technology Platform Provider)' 비전 달성을 위해 함께 나아갈 우수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채용분야별 공고문과 채용직무 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4월 23일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 1. 채용내용

- 고용형태 : 기간제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 계약기간 : 2026.6.8.(월) ~ 2026.12.8.(화)
  - ※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 연장 시 근무평가(근무성적이 '우' 이상인 자에 한함)을 거쳐 육아휴직 기간 내 근로계약 기간 연장 가능
- 급여수준 : 4,107,030원/월 (원천세 및 4대보험 등 공제 전 금액)
  - ※ 경영평가성과급산 및 복리후생비 별도
  - ※ 연장 및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 실적에 따른 수당 정산 지급 (○) / 보상 휴가 시행( ) (가산임금률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 법정요율에 따른 내부기준 적용)
  - ※ 월 미만 근무 시, 근무일에 따라 일할계산 하여 지급
  - ※ 퇴직 시 퇴직급여 별도 지급(단,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급여 미지급)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시업 : 09:00, 종업 : 18:00, 휴게시간 : 12:00~13:00)
  - ※ 필요시 시업 및 종업시간 조정 가능
- 담당업무, 채용인원 및 근무지

분야	담당업무	채용인원	근무지
기술	• 열에너지파트 및 경상정비 주요업무	1명	경남 통영시(사택 미제공)

- ※ 해당 채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및 기간제법 제4조에 의거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채용 관련 문의는 담당자(055-640-6453, 202908@kogas-tech.or.kr)로 연락 바랍니다.

## 2. 지원자격

구 분	요 건
필수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전면허 2종보통 이상 소지자로 <b>운전가능자</b></li> <li>○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b>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b>)</li> <li>○ 우리공사 「인사규정」 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li> <li>○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li> <li>○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 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li> <li>○ 각 채용분야 중복 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li> <li>○ (임용일자)부터 근무가능자</li> </ul>

## 3. 우대가점 사항

구 분	우대가점 사항										
자격증 (최대 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이상 소지자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width: 100%;">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등급</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전기, 전기공사,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사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산업기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16</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능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3개까지 합산</li> <li>(단, 동일 종목은 높은 점수의 자격증 1개만 인정) <b>최대 40점 만점</b></li> <li>(예) 가스 산업기사, 가스 기사 중복 보유시 가스 기사로 20점 부여</li> </ul> </li> </ul>	구분	등급	점수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전기, 전기공사,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기사 이상	20	산업기사	16	기능사	12
구분	등급	점수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전기, 전기공사,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기사 이상	20									
	산업기사	16									
	기능사	12									
경 력 (최대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발전소, 석유·화학, 가스, 에너지, 플랜트 등) 시공 및 정비 유경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월 × 1점(최대 30점)</li> <li>※ 정규직, 인턴,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근무형태 무관</li> <li>※ 근무일수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만 인정</li> <li>※ 경력계산 : 모든 근무기간을 일 단위로 환산하여 30일로 나누어 계산 (소수점 이하 절사)</li> <li>※ <b>동일 근무 장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인정</b></li> </ul> </li> <li>- 경력증명서 상 직장날인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담당업무 기재)</li> <li>※ <b>직인 및 담당업무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b></li> </ul>										
지역우대 (최대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 통영시 거주자 &lt;사택 미제공&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전일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기준</li> </ul> </li> </ul>										

가점사항	<b>보훈</b>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동법 제 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b>장애</b>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b>경력단절여성</b>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여성으로, 최소 연속경력이 1년 이상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라 혼인,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2가지 이상 중복의 경우 모두 적용 ※ 서류전형 만점의 4할 미만 및 면접전형 원점수 4할 미만인 경우 가점 부여 제외 ※ 단, 취업지원(보훈)대상자는 채용인원이 4인 이상인 전형에 한하여 우대 적용		

#### 4. 전형절차 및 일정

##### □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 5배수 선발, 입사지원서 및 우대요건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채용예정인원 선발, 직무수행능력, 관련분야 경험 등에 대한 질의  
 응답(인성 및 자질평가)
  - 과락 기준 : 총점 6할 미만(가점 포함)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구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 6할 이상인 자 중 면접점수(100%) 평가점수 고득점자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가점 고득점자
    - (2순위) 장애인 등록자
    - (3순위) 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 (4순위) 서류전형 총점(가점포함) 고득점자
  - ※ 기준 모두 적용 후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소수점 처리 : 모든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전형일정

전형절차	기간 및 일시	내용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6.4.23.(목) ~ 2026.5.7.(목) ※14일(초일불산입) 이상 공고	○ 채용공고 : 홈페이지, 알리오, 워크넷 ○ 접수방법 : 채용사이트 접수 <a href="https://kogastech.recruiter.co.kr">https://kogastech.recruiter.co.kr</a> ○ 접수마감 : 2026.5.7.(목) 15시까지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6.5.13.(수)	○ 응시자 입사지원서 평가 ○ 채용사이트 통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면접전형	2026.5.18.(월)	○ 장소 : 한국가스기술공사 통영기지지사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로770) ○ 실무지식 및 경험, 자질, 인성 등 평가
최종합격자 발표	2026.5.21.(목)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및 채용사이트 확인
임용(예정)일	2026.6.8.(월)	○ 근무지 : 한국가스기술공사 통영기지지사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로77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5. 제출서류

구비서류		제출시기
공통	○ 입사지원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해당자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면접일 ※ <b>미제출시 면접응시불가</b>
	○ 주민등록초본(군경력 기재)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생년월일만 표시) 원본 1부 - 공고일 이후 일자로 발급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b>공고일 이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b>	
	○ 자격증 사본 1부(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포함) ○ 경력증명서(담당업무 기재)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서 원본 각 1부 ○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력단절여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혼인, 임신, 출산, 육아 사실 확인서류) *경력단절여성 :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은 여성으로 최소 연속경력이 1년 이상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라 혼인,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경력단절여성 증명 서류 :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가입이력서 필수	

○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장 직인이 날인되고** 입사일 등 날짜가 정확히 표기된 것에 한함

- 자격증 등 제출서류는 발급기관에 진위 확인을 요청할 예정이며 입사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진위확인 및 인정기준
  - 자격증(운전면허증 포함)
    - 진위확인 방법 : 자격증 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자격증 발급 기관에 확인
    - 인정기준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이 유효하여야 함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거주지 및 병역사항 확인)
    - 진위확인 방법 : 발급기관의 원본서류 제출 통해 진위 여부 확인
    - 인정기준 : 채용공고 게시전일 주민등록 등본상 지원사업장 소재지 거주하여야 함
    -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90일 이내의 서류 제출
- ※ 주민등록 초본상 균경력 기재 필수

## 6.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접일 서류 미제출 시 면접 응시가 불가하오니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화에 필요한 개인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인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를 불성실하게 기재하거나(기재착오, 누락, 입력조건을 채우기 위한 글자의 반복 입력 등), 온라인 제출자료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의 성실 기재 및 합격자 발표일 등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채용분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 합격 및 채용 취소
  -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부터 임용 전 입사포기, 임용 후 6개월까지 해당 채용에서 퇴사자 발생, 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당초 계획인원에 미달할 경우 예비합격자(채용계획인원의 5배수)를 두어 결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 ※ 단, 면접전형 과락자,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자, 미응시자는 예비순위 부여하지 않음
  - 채용비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직원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기 위해 전형절차별 예비순위 해당자(채용계획인원의 5배수)를 확인하여 피해자 구제에 활용합니다.
  - 최종 합격자 결정 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등 채용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하며 취소일로부터 5년간 우리공사 입사를 제한합니다.(접수된 서류 미반환)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

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구합니다.(붙임 참조)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입사포기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입사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입사포기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입사포기의사를 밝히고 입사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입사포기각서의 제출 없이도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 반환할 예정입니다.
  - (반환청구방법) 본인이 신청한 「채용서류반환청구서」에 의함
  - (보관기간) 임용일로부터 90일까지
  - (개인정보보호) 보관기간 이후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즉시 파기
  - (반환방법) 채용서류의 반환은 본인 직접 수령 및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함
  - (반환의무 예외)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회사에서 요구한 채용서류 외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음

□ 이의신청 접수 : 전형별 불합격자 이의신청 접수

- 방법 : 한국가스기술공사 통영기지지사 채용담당자에게 문의 및 접수  
(202908@kogas-tech.or.kr, 055-640-6453)
- 신청기한
  - 서류전형 불합격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 익일까지
  - 면접전형 불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까지
- 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 관련 부정행위 및 불합격자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
- 이의신청처리 예외사유 :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평가자 개인정보 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채용 결격사유(인사규정 제5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026. 4. 23.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